

경희동서약학연구소규정

제 1 조(명칭)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부설 동서약학연구소(이하 ‘연구소’라 함)라 칭한다.

제 2 조(소재지)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내에 둔다.

제 3 조(목적) 본 연구소는 약학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(기구) 본 연구소에는 소장, 연구부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 5 조(소장) ①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 약학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전반을 통괄한다.

제 6 조(연구부) 본 연구소에는 기초약학연구부, 의약품 개발연구부, 의약품의 안전성 및 효능 연구부, 환경위생연구부를 두고 각각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기초약학연구부는 약학전반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한다.
2. 의약품 개발연구부는 천연약품, 미생물약품, 합성약품의 개발 및 제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.
3. 의약품 안전성 연구 및 효능 연구부는 약물의 효능과 안전성 및 약물대사에 관한 연구와 약원성 질병조사를 수행한다.
4. 환경위생연구부는 오염물질 및 부폐물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.

제 7 조(부장) ① 각 연구부에는 부장을 둔다.

②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중 소장의 추천으로 약학대학장이 임명한다.

제 8 조(연구원)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원을 둔다.

②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중 소장의 추천으로 약학대학장이 임명한다.

제 9 조(보조연구원) ① 본 연구소에는 필요한 경우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② 보조연구원은 본교 조교 또는 대학원생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약학대학장이 임명한다.

제 10조(운영위원회)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 각 연구부장 및 약학과장과 함께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운영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약학대학장이 임명한다.

③ 소장은 위원장이 되고 회의를 소집하며 회무를 관장한다.

제 11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 운영위원회는 소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사항을 심의한다.

- (1) 연구소의 운영계획 및 연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(2)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(3) 본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
- (4) 연구소 관련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(5)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(6) 기타 연구소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

제 12조(의결방법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8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